

미국에서의 소년법정 취재

미국언론자유기자위원회

이 글은 「The News Media & The Law」 (1991 년 가을호)에 실린 「언론자유기자위원회」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의 「Access to Juvenile Courts」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한기택 판사와 박종술 판사가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소년법원의 재판절차는 일반이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며, 최근의 법원의 결정들을 보면 가까운 장래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많은 재판권역의 법원들이 수정헌법 제 1 조의 형사절차에의 참여권과 대비하여, 소년재판절차에 대하여는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데,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 관한 대다수 주의 법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년법정의 기록이 심지어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비공개 서류이고, 다만 제한적인 접근이 일반이나 언론에게 허용된다.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이해관계

다수의 재판권역의 법률은, 이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만 소년재판절차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곳의 재판권역, 앨라배마, 콜럼비아구, 버진 아일랜드는 소년의 인적사항을 법원 밖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참여는 명백히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콜럼비아특별구는 판사들에게 소년이나 그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아래 기자들에게 소송절차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1 년 7 월에 판결을 내린 한 사건에서, 판사는 언론기관에게 살인으로 기소된 소년범의 재판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다만, 소년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신문사의 기자만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콜럼비아특별구의 항소법원은 위 명령을 취소하면서, 위 법원의 결정은 소년과 그의 재판을 위한 시도를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일리노이의 소년재판절차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법은 법원이 미성년자의성명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언론기관의 참여를 명백히 허용한다.

한 일리노이의 항소법원은, 심지어 소년측이나 검사가 비공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소년의 인적사항 비공개에 관한 약속을 거절한 캠페인 뉴스 가제트지의 소년재판절차에의 참여를 불허한 1 심판사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위 항소법원은, 비록 형사재판절차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으나, 소년재판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이는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신문사가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소년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성명을 알아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일단의 주들은 판사에게 다른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소년재판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의 출석이 절차상 필요하다든지, 또는 사회나 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건, 네브래스카, 오리건, 텍사스주가 이에 속한다.

소년으로서 재판받는가, 성인으로서 재판받는가

어떤 주들은 소년범들이 성인으로서 재판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송심리에 기자들이 참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애리조나 데일리 선지의 경우, 위와 같은 심리를 판사실에서 열 것을 요구하는 주 헌법규정이 일반인을 배제하는 것까지 명령하지는 아니한다는 주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송심리에 참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위 주대법원은 주 헌법과 소년재판절차법에 따라 이송심리의 일반공개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심리판사에게 있다고 하였다. 위 법원은 헌법규정에 있어서 「판사실에서」라는 문구의 사용은 일반대중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위 법원은 그 사건의 사실들과 소년의 이름이 이미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 신문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버몬트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또는 소년으로서 재판받을 것인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기소사실인부절차와 사건서류들을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위 대법원은 또 예심절차는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법원으로 이송되었을 때에만 비공개로 된다.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테나, 테네시, 유타를 포함한 몇몇 주들은 소년이 기소된 범죄의 경중과 그의 연령 또는 위 두 가지 모두에 기초하여 소년재판절차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2월 매사추세츠주는 청소년이 1급 또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에 소년재판절차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이송심리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할 적법절차상의 권리가 소년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새로운 법은 그 발효전에 기소된 소년의 심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뉴욕주의 최고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이거나 연소한 성인인 경우에도 중죄인 사건의 선고절차는 일반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캔자스주에서는 소년의 연령이 재판절차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소년이 범행 당시에 16세 이상이면 재판 절차 중 선고과정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소년이 16세 미만이면 판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는 정당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일부의 주에서 비공개 명령은 그에 상당한 사유가 될 만하고, 법원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적정한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인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소년의 상담관이나 법원이 절차공개가 소년의 재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간단히 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비공개명령은, 소년의 재활이 절차의 공개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지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인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소년의 의사가 고려되는가

어떤 사법권역에서는, 미성년자나 그의 부모가 공개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위스콘신, 버지니아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소년에 의한 비공개요구는 법원에 의하여 진지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흔하다.

뉴저지주의 한 사건에서,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신문,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지와 컴덴큐리에 포스터지는 고등학교 내의 탈의실에 연막탄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관계 형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의 심리과정의 취재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그 장치가 폭발성을 가졌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소년과 부모는, 그 심리에 제출될 심리학적인 증거가 소년에게 유해한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접근을 반대하였다.

신문들은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였고 또 이미 보도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년법원은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년법원이 소년의 재활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는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물론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적법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참여를 허용할 권한이 있다. 법률은 언론이나 일반인도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결정은, 소년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중요한 편견을 초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그 소년의 행위능력유무에 관한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원은, 캘리포니아법 아래서는, 소년이 다수의 중범죄 중 한가지로 기소된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언론을 행위능력에 관한 심리로부터 배제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제한적인 공개

소년심리의 제한적인 공개를 규정한 법을 가진주들에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뉴멕시코가 이에 속한다. 한 플로리다 순회법원은 주 법률상 언론이 자기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에 대한 심리를 참관하고 사진촬영도 할 수 있으나, 얼굴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위 법원은 소년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언론의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하여는 상식과 법조 경험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 법원은 소년의 사진을 공표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일반인이 그 절차에서 일어난 일을 공표하지만 아니한다면 이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법은 일반인을 소년재판절차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뉴욕시 가정법원은 소년심리 절차는 제한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며, 소년이 주장한 프라이버시권리는 국민과 언론의 관습법에 기초한 접근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법원은 소년이 접근권을 극복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건기록의 비밀유지는 규범인가

소년법원의 사건기록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주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주는 사건기록을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일반인과 언론의 접근을 불허한다.

특정한 사람들, 예컨대 심리절차의 대상인 소년, 그의 변호사,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법원의 업무나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법에 따라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이 당연히 또는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법에 의하면 법원의 명령이 요구된다.

많은 주들은 일반인이나 언론이 합법적인 연구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열람할 필요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소년재판절차의 기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애틀 타임즈지가 1983 년의 워싱턴 주 대법원의 사건에서 기록열람을 신청하였을 때, 소년과 가족들은 소년의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문의 연구가 주법에 따른 합법적인 연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또, 동일한 소년사건에 관하여 이전에 다른 지역신문에 센세이셔널한 기사가 게재되었다거나 그 사건이 아직 심리중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신문의 접근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접근에 성공하는 요령

재판절차에의 접근에 성공하기 위하여 기자들은 주법뿐만 아니라 주헌법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애리조나주와 같이 수정헌법 제 1 조보다 더 많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는 주에서는 주 헌법에 기초한 참여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이 소년재판절차에의 참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주에서는 판사에게 공개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보라. 만약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게 참여권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당신이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노력해보라.

만일 소년법의 인적사항이 이미 알려졌다면, 당신을 배제하는 것이 소년의 비밀보호에 아무런 보행이 되지아니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 사법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자유에 관한 수정헌법상의 권리와 소년의 교정에 관한 주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 일반의 접근이 반드시 소년의 재활을 위한 주의 목표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아래에서 각 주의 소년재판절차에의 접근과 소년법원의 사건기록에의 접근,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재판권역별 소년사건취재를 위한 가이드

앨라배마

법 12-15-65(a)조(1900): 일반대중은 소년비행 심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 증인, 변호사,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 다른 사람들은 허용될 수 있다. 또 판사는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년이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

법 12-15-100-101 조(1990): 소년법원의 기록은 판사와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사례 없음

알래스카

법 47. 10. 090 조(1990): 일반인은 소년심리 절차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법 47. 10.090 조(1990): 소년법원의 기록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또 기록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사례 없음

애리조나

소년법원법 19 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허용될 수 있다.

개정법 8-208 조(1990): 소년법원기록은 보호관찰직원, 검사, 변호사, 다른 병원 및 교도소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일반인이나 언론기관에 기록을 공개 하는 것을 특별히 금하지는 아니한다.

소년심리: 소년을 성인으로서 기소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소년법의 심리는 공개되는데, 위와 같은 심리는 판사실에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는 애리조나주 헌법 제 5 장 제 25 조가 일반인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ideman v. Garbarino, 160 Ariz. 16, 770 p.2d320(1989)

아칸소

법 9-27-325(i)조(1987): 소년비행심리에 있어서 소년은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 9-27-348 조(1987): 언론기관은 심리의 대상인 소년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서면 허가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

법 9-27-300 조(1987): 병원은 모든 소년사건 기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여타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없음

캘리포니아

복리제도법 제 9 장 제 346 조(1988): 일반인은 미성년자나 그 부모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년법원 심리로부터 배제된다.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허용할 수 있다.

복리제도법 제 21 장 제 827 조(1998): 소년법원의 기록은 법원직원, 미성년자, 그의 부모, 그리고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구류심문: 살인을 한 소년피고인의 구류심문을 언론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비공개로 해달라는 신청은, 이미 그 소년의 이름과 사진의 공개를 비롯하여 언론에 의하여 널리 다루어 졌고, 일반인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In re Gjevre, 5Med. L. Rptr. 2329(Cal. Super. Ct.1980)

행위능력심문 : 살인죄로 기소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소년법원에서의 심문은, 그녀가 공정한 배심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녀의 권리에 관하여 중요한 편견이 개재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허가되었다.

Cheyenne K. v. Super. Ct., 208 Cal App. 3d311, 256 Cal Rptr.68(1989)

행위능력심문. 법원이 언론기관에 대하여 유괴 및 살인으로 기소된 소년에 대한 행위능력심문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가한 명령은, 법원은 특정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고 또 소년이 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개연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효하다. Brian W. v. Superior court, 143 Cal.Rptr.717, 574 p. 2d 788(1978)

콜로라도

개정법 19-1-106(2)조(1986): 소년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년심리 절차로부터 일반대중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법 19-1-119 조(1986): 소년법원의 기록은 제한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법원의 허가 아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도금지: 법원의 허가없이 소년의 성명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콜로라도 법은 위헌적인 중대 제한이다. Colorado v. Denver Publishing, 597 p.2d 1038(Colo Sup. Ct. 1979)

코네티컷

일반법 46b-122 조(1986): 판사는 소년심리절차에 필요 없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법 46b-124 조(1986):** 모든 소년법원의 기록은 비밀로 취급된다. 그러나 기록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다.

보도금지: 소년을 그들의 범죄에 관한 공개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언론이 입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In re Juvenile Appeal, 195 Conn. 303, 488 A. 2d778(1985)

델라웨어

법 10 장 972(a)조(1990): 모든 소년법원재판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중범죄 심리는 예외로 한다.

법 10 장 972(b)조(1990): 법원기록은 상급법원과 소년봉사국이 보관한다. 죄가 중범죄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서기는 언론의 요구가 있으면 소년과 그 부모의 이름을 공개 할 수 있다. 사례없음

컬럼비아특별구

법 16-2316(e)조(1981) 및 상급가정법원규칙 53(a)조(1991): 일반대중은 절차로부터 배제된다.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언론기관 종사자는 소년이나 그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

법 16-2331 조(1981): 소년법원의 기록은 비밀로 취급되지만, 변호사, 소년과 그 부모 및 보호관찰직원에게는 공개될 수 있다. 기록을 열람하는 사람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급법원은 특정인에게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언론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취재거부: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14 세 소년의 이름을 보도한 직후 모든 언론기관의 대표자는 살인으로 기소된 소년의 재판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원래 법원은 소년의 이름을 보도한데 대한제재로서 위 신문을 배제하였으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다른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참관을 허용하였다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파기하면서, 위 법원이 「법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고 판시 하였다. In re J.D.C., D.C. Ct App., No. 91-345(July 3. 1991)

법원기록: 만일 청소년범죄자가 보호관찰기간만료 전에 보호관찰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 유죄판결기록은 분리된 창고시설에 있는 형사기록센터로부터 물리적으로 옮겨지며, 적법한 범죄수사를 수행 하는 법집행관을 제외 하고는 공사적 관계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최종판결이 있는 후 소년이 보호관찰로부터 면제되었을 때에는 기록관리를 관장하지 아니한다. Doe v. Webster, 606 F.2d 1226(D.C. 1979)

플로리다

법 39.052(1)조 (1991): 모든 심리는 일반에게 공개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의 이익과 소년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권한이 있다.

법 39. 045(4)조 및 39. 411 조(1990): 모든 법원기록은 비밀로 취급되며, 권한 있는 법원직원, 보호관찰관, 법집행관 기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열람권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 한다.

구류심문: 출판 및 방송매체들은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에 대한 구류심문을 참관하고 촬영할 권리가 있으나, 소년의 얼굴사진은 촬영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In re B. p., 9 Med. L. Rptr. 1151 (Fla. 4th Cir, Ct. 1983)

조지아

법 15-11-28(c)조(1990): 일반대중은 소년법심리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참여 할 수 있다.

법 15-11-58 조(1990): 소년법원의 기록은 병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열람할 수 있다.

언론매체의 출석: 심리중 또는 판결중에 언론의 출석을 반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년의 아버지는 언론매체의 출석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못하였다.

Heath v. McGuire, 167 Ga.App. 489, 306 S.E. 2d741 (1983)

중범죄: 소년법 중 살인, 무장강절도범의 심리는 일반인의 공개에 관한 이익이 주나 소년의 비공개에 관한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언론과 일반인에게 공개 된다.

비행사건기록 : 비언론기관인 당사자의 요청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소년법원은 공개가 소년의 이익을 위하거나 주 헌법이 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년비행사건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비행사건심리: 주는 비행사건심리를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있으나, 일반인과 언론에게 주와 소년의 비공개에 관한 이익이 일반인의 공개심리에 관한 이익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Florida Pub. Co. v. morgan, 253Ga. 467, 322 S.E. 2d 233(1984)

하와이

개정법 571-41(b)조(1985):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출석이 부모나 보호자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판사가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소년심리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개정법 571-84 조(1985): 소년의 입장에서 사건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얻은 사람만이 소년법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송인명부, 소장, 고소장, 신청서 및 사건기록에 철해진 서류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사례없음.

아이다호

소년법 22(b)조: 일반인은 심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나 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허가할 수 있다.

법 16-1818 조(1991): 법원의 서면명령에 의하여서만 법원의 소송인명부, 소장, 고소장, 신청서 및 사건기록에 철해진 서류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

사례 없음

일리노이

개정법 37 장 801-5(6)조(1990): 언론매체와 피해자만이 비행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은 누구에 게든 소년의 인적 사항공개를 금할 수 있다.

개정법 37 장 801-8 조(1990): 일반대중이 아닌 언론 매체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년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절차: 심리법원은 비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광범위한 공개가 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일반인을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심리법원은 신문이 소년재판 절차 중 입수한 소년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 할 권한이 없다.

In re a Minor(Illinois v. Champaign News-Gazette, 205 I11 App.3d 480, 563 N.E. 2d 1069(1990)

보호명령: 소년구속사건에 관한 일반인의 토론을 금지한 보호명령은, 당사자나 변호사의 행위가 구속절차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하였다는 특별결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다.

In re Summerville, 190 I11. App. 3d, 1072, 547 N.E. 2d 513(1989)

재판권: 일리노이항소법원은 신문이 살인죄로 기소된 소년의 성명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소년법원의 명령이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것이고 절차를 통제하기 위한 심리법원의 권한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

In re No Name, 160 I11. App.3d 613, 513 N.E.2d 1185(1987)

보도금지: 법원은 기자가 보통의 취재방법을 사용하여 입수한 것이라면, 소년피고인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을 제지할 권한이 없다.

In re a Min or Whose Name Is Omitted, 127 I11. 2d 247, 537 N.E.2d 292(1989)

보도금지: 소년의 인적사항과 소재가 널리 유포되었기 때문에 심리법원이 언론으로 하여금 소년심리 절차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In Re M.B. (Illinois v. The Daily Pantagraph), 137 I 11. App. 3d 992, 484 N.E. 2d I54(1985)

보도금지: 주검사는 소년심리절차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성명보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1974 Op. Atty. Gen No. S-803

보도금지: 사법절차에 즉시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소년법원은 언론매체가 소년심리절차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1973 Op. Atty. Gen No. S-645

절차에의 접근: 국민이 병정에서 일어난 일을 알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피고인이 비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언론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을 배제하는 비행심리상의 판사의 명령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In re Jones, 46111. 2d 500,263 N.E.2d 863(1970)

인디애나

법 31-6-7-10(b)조(1987): 판사는 사회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여 소년재판절차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31-5-8-1(e)조(1987): 합법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동의가 있는 후에 병원의 비밀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입수내용을 공표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포기심문: 소년이 성인재판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공개 명령을 해야 한다. 법원은 언론매체에게 사건기록과 재판절차에의 참여의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언론자유보장과 미성년범죄에 관한 정보유출로부터 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교 고려하여야 한다. Tylor v. State, 438 N.E. 2d 275(1nd.1982), cert. denied, 459 U.S. 1149(1983)

보도금지: 소년범을 그들의 기록공표로부터 보호하는 이익이 그 자료를 공표하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언론자유 이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법원의 자료공표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의 언론의 이익이 비밀유지의 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소년관련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 State v. Shelby Superior Court, 396 N.E. 24337(1nd. 1979)

아이오와

법 232.39 조(1991):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관하여 가지는 일반대중의 이익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가능성에 우월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을 심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법 232. 147(2)조(1991): 일반인이 심리로부터 배제되었다면 그 절차의 서류들도 법원의 허가명령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한다. 소년의 이름 법집행기관에 관련된 소년의 이름은 언론매체의 대표자가 232 조의 비밀유지조항 적용 배제 요건을 입증하지 아니 하는 한 언론매 체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조항 적용 배제는 법원의 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성실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가능하나, 개인적인 신원자료는 공개될 수 없다. 1979 Op. Atty. Gen. (Kirken-stager) Sept. 26, 1979

캔자스

법 38-1652 조(1986): 소년이 범행 당시에 16 세 이상이면 절차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가 연령이 더 적으면 법원은 일반인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절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다.

법 38-1607 조(1986): 일반인은 범행 당시 16 세 이상인 소년에 관한 법원기록에 대하여 접근권이 있다. 그 연령이 되지 아니한 소년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일반인은 접근권이 없다.

비공개명령: 캔자스 심리 법원이 15 세가 넘는 두 소년에 대한 구류심문을 비공개로 한 것은, 캔자스법 38-1652 조가 선고절차에만 적용되고 구류심 문에는 적용되 지 아니 한다는 결론과 그 심문에 제출된 증거가 캔자스법 38-1607 조에 의한 비밀 유지 대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Stauffer Communications Inc. v. Mitchell, 246 Kan 492, 789 p.2d 1153(1990)

켄터키

개정법 610. 070(3)조(1990): 일반인은 절차로부터 배제된다. 판사가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허용될 수 있다.

개정법 610.340 조(1990): 소년 법원의 기록은 비밀이며, 상당한 사유에 기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서만 당해 소년이나 그 부모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다.

비공개명령: 소년을 성년법정으로 이송하는 이송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한 명령에 기한 소년의 항소에 관한 순회법원의 사건기록과 심리로부터 일반인은 배제될 수 있다. F.T.p. v. Courier-journal. 774s. w.2d 444(Ky. 1989)

루이지애나

소년절차법 14(E)조: 소년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소년절차법 69 조: 법원은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소년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심리절차는 공개된다.

소년절차법 122, 123 조: 모든 법원기록은 비밀이다. 특별한 조사나 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에 기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법원기록은 사람이나 기관에게 공개될 수 있다.

사례없음

메인

개정법 15 장 3307(2)조(1990): 소년심리절차는 범죄가 성인에 의하여 범해졌을 경우에 C 급 중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개정법 15 장 3308 조(1990) : 절차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기록도 공개된다. 비공개로 한 절차의 기록이라도 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원의 승낙을 얻은 사람은 열람할 수 있다.

서류에의 접근: 브룬스윅 타임즈 레코드의 한 기자는 소년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소년방화 사건에 철해진 보도금지 신청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변호사는 나중에 그는 서류의 열람을 허가할 법률상의 권한이 없음을 발견하고 기자에게 신청관계서류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하였다. 지방법원은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 신문에게 그 서류 내용의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 메인 상급법원은 신문이 적법하게 입수한 서류는 비록 기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 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보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State v. Yard. NoCV-83-897(Maine Super Ct. Aug. 26, 1983)

메릴랜드

법 910(b)조: 판사는 소년재판절차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사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법원 및 소년절차법 3-828 조(1989): 기록은 비밀이고 법원의 상당한 사유에 기한 명령이 없으면 공개 될 수 없다

사례없음.

매사추세츠

일반법 119 장 85 조(1991): 일반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소년재판절차로부터 배제 되지만, 소년이 1 급 또는 2 급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법 119 장 60(A)조(1991): 법원의 기록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이 범행 당시에 14 세 이상이고, 17 세 이상이라면 실형을 받았을 행위로 2 회 소년비행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기소된 행위가 17 세 이상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법의 적용: 1 급 또는 2 급 살인죄로 기소된 소년의 재판절차에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 119 장 65 조의 1990 년 12 월 개정조항은 위 법이 발효되기 전에 기소된 소년의 심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News Group Boston Inc. v. Mass.627, 568 N.E. 2d 600(1991)

보도금지: 언론기관이 소년범이나 그 피해자에 관하여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는 그 보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Globe Newspaper Co. v. Supper. Ct., 423 N.E. 2d 773(Mass. 1981)

미시건

비교법 27, 3178(598. 17)(7)조(Callaghan 1991): 만일 법원이 소년증인이나 피해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인은 심리절차로부터 배제된다.

비교법 27. 3178(598. 28)(2)조(Callaghan 1991):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 기록을 제외한 모든 사건기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위 기록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서만 공개된다.

미네소타

법 260. 155(1)조(1991): 일반인은 법원이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소년이 범한 행위가 성인이 범행하였을 경우 중죄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에 16 세 이상이면 심리는 공개된다.

법 260. 161(2)조(1991): 법제 260. 155(1)조에 의하여 절차가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원의 재판기록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 한다.

보도금지: 심리중인 미결사건과 방치중인 절차에 관한 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정보가 공개된 기록으로부터 독립된 출처에서 합법적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위헌적인 중대제한이다. Minneapolis Star and Tribune Co. v. Schmidt, 360 N. W.2d 433(Minn. App. 1985)

보도금지: 소년심리절차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중대 제한이다. Minneapolis Star and TribuneCo. v. Lee, 353 N W. 2d 213(Minn. App. 1984)

친권재판: 법원이 친권상실재판에 기자의 참관을 허용한 것은, 그 신문이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가졌고, 그 이해관계가 당사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 법원은 기자의 출석이 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론내렸고, 기자는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비공개로 할 것을 약속했다. In re R.p.K., 269 N.W.2d 367(Minn.1978)

미시시피

법 43-21-203(6)조(1981): 일반대중은 그들이 법원의 사건이나 병원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심리에서 배제된다.

법 43-21-261 조(1991): 병원의 명령 없이는 법원의 기록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미주리

법 211. 171(5)조(1991): 일반대중은 법원의 사건이나 법원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차에서 배제된다.

법 211. 321 조(1991):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기록은 공표될 수 없다.

몬테나

법 41-5-521(5)조(1990): 만약 소년이 성인이었다면 그의 범행이 중죄로 간주될 경우에는 일반대중은 절차에 참석 할 수 있다.

법 41-5-601(2)조(1990): 법원이 이송심리를 비공개로 하지 아니하면 소년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 받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송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이외에는 병원의 모든 절차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 41-5-603(1990): 법원의 기록은 그가 법원의 사건이나 업무에 대하여 유효한 이해 관계를 가진다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네브래스카

개정법 43-277 조(1988): 성문법은 절차가 일반대중이나 언론에 공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중립적이다.

개정법 43-2, 108 조(1988): 법원의 기록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의료, 사회복지, 보호관찰에 관한 법원의 기록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네바다

개정법 62.193(1)조(1989):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된다. 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허용된다.

개정법 62.360 조(1986): 기록은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서만 열람에 공개될 수 있다.

뉴 햄프셔

개정법 169-B:34 조(1990): 소년절차는 일반대중에게 비공개로 한다.

개정법 189-B:35 조(1990): 일반대중은 법원의 명령이나 서면으로 된 소년의 동의 없이는 법원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법 169-B:36 조(1990): 소년기록을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자는 법정모독의 책임이 있다.

개정법 169-B:37, 38 조(1990): 뉴스 미디어가 법원의 허가없이 그 소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보도하거나, 소년에 관한 법정절차를 보도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중죄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뉴 저지

개정법 2A.4A-60(g)조(1987): 법원은 소년, 그의 부모, 검사 또는 미디어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다른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기하여, 소년에게 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대중을 절차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참석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개정법 2A: 4A-60 (a)-(d)조: 만약 성인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 그 범행이 성문법에 열거된 몇 가지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 기록은 일반인의 조사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공개절차:** 세세한 가정문제와 심리적인 정보를 비밀로 할 것에 대한 소년과 그의 가족의 이익은 미디어의 정보에 접근할 이익보다 크고, 절차를 비공개로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은 언론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In re D.B., 181 N.J. Super 586, 439 A. 2d 94(1981)

기록의 비밀성: 주의 신문편집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주 당국이 그 신문이 보도한 정보를 소년기록의 비밀성을 요구하는 성문법을 위반하여 얻었음을 보여주는 데에 실패하였으므로 기각되었다. 7 Med. L. Rptr. 1542(N.J. Super Ct. 1981)

비밀을 위한 절차: 상당한 이유와 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은 재할에 관한 소년의 소망과 범법자의 어떤 특별한 환경에 대비하여 일반대중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을 할 것을 요한다. *In re B.C.L.*, 82 N.J. 362, 413 A.2d 335(1980)

뉴 멕시코

법 32-1-31 (b)조(1989) : 범죄에 관한 심리는 판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심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다.

법 32-1-44 조(1989): 과실죄나 학대죄에 관한 심리 및 법원이 보관하는 심리에 관한 기록, 의료에 관한 기록, 가석방에 관한 기록만이 비밀이다. 만약 법원의 기록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사례 없음.

뉴욕

가정법원법 741(B)조 (1983 년 통합):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오직 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가정법원법 166 조 (1983 년 통합): 기록은 무관한 일반대중의 검사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를 허가할 수 있다. 성문법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검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선고절차: 피고인에게 소년으로서의 지위가 허용된 중죄사건에 있어서 선고절차는 원칙적으로 언론과 일반대중에게 공개된다. *Capital Newspapers v. Moynihan*, 71 N.Y. 24263, 519 N.E.2d 825(1988)

비공개명령: 심리전 심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며, 판사가 비공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극복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Herald Co. v. Tormey*, 537 N.Y. 2d 978, 142 Misc. 2d 4675(N.Y. Sup. Ct. 1989)

법원기록에의 접근: 신문은 소년범법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로는 인정받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중죄 소추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Orange County Publications v. Sawyer*, 1766(N.Y. Sup. Ct. 1987)

프라이버시: 소년피고인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언론과 일반대중의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에 참석할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판사는 소년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자가 당사자 및 증인들의 이름이 공표되지 아니할 것 이라고 약속한 점을 고려 하였다. *In re Chase*, 446 N.Y.S. 2d 100, 112 Misc. 2d 436(1982)

접근권의 부정: 9 세된 아이가 만약 그가 성인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범죄가 될 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위한 심리에 뉴스 미디어가 접근할 것이 부정되었다. 법원은 소년이 대단히 나이가 어린 점, 피고 변호인이 이의하고 있는 점, 만약 접근이 허용된다면 법원이 소년과 그의 가족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접근을 부정하였다. *In re Robert M.*, 7Med. L. Rptr, 1773(N. Y. Fam. Ct. 1981)

접근권의 부정: 사실심 법원이 언론과 일반대중을 13 세된 자의 고의살인혐의 소추에 있어서의 예심절차로부터 배제하고, 대신에 심리의 편집된 기록에 접근할 것만을 허용하였다 하여 사실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가 더 이상 위협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리가 끝난 후에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더 이상 언론이 어떠한 접근권을 가지는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 *In re Merola*, 47 N.Y 2d 985, 393 N.E. 2d 1038, 419 N.Y.S. 2d 965(1979)

접근권의 긍정: 사실심법원이 미디어로 하여금 15 세된 자의 절차에 접근할 것을 허용한 것은 옳았다.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미디어의 뉴스 취재권과 일반대중의 정보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New York v. Green*, 4 Med. L. Rptr 1561(NY Sup. Ct. 1978)

노스 캐롤라이나

일반법 7A-629 조(1989): 판사는 소년이 심리를 공개할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에서 일반대중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일반법 7A-675(a)조(1989): 판사의 명령이 없이는 일반대중은 기록을 조사할 수 없다
사례없음

노스 다코타

법 27-20-24(5)조(1991):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제외된다. 다만 병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절차나 법원의 업무에 받아들일 수 있다.

법 27-20-51 조(1991): 법원기록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조사되어질 수 없다. 법원은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건이나 법원업무의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사례 없음

오하이오

소년절차법 27 조 및 개정법 2151.35(A)조(Page1990): 법원은 일반대중을 절차에서 배제시키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법 2151.18 (c)조 (Page 1991): 성문법이 미디어로 하여 금 법원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문법은 주 공무원에게 소년범죄의 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통제적인 보고를 발간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성문법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인 접근: 소년법원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거나 비공개 된다는 원칙이 없다. 법원은 소년규칙 27 조와 오하이오 개정법 2151.35 에 따라 만약 심리후에 법원이 일반대중의 접근이 어린이들에게 해롭거나 재판의 공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잠재적인 해가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할 이익보다 클 때에는 일반대중이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In re T.R.*, 565 Ohio St. 3d 6,556 N.E. 2d 439(1990)

비공개전의 심리: 언론과 일반대중을 소년법원절차에서 배제하기 전에 소년법원은 증거조사를 위한 심리를 하고, 소년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론과 일반대중의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권리보다 큰가를 형량하여야 한다. Ohio ex ret. Dispatch Printing v. Petree, 15Med. L. Rptr. 2200(Ohio Ct, App. 1988)

접근이 허용된 사례: 사실심법관은 일반적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데에 관한 소년에 대한 심리를 일반대중과 뉴스미디어에게 공개할 권한이 있다. State ex ret. fyffe v. Pierce, 40 Ohio St 3d 8, 531 N.E. 2d 673(1988)

접근이 허용된 사례 : 소년이 살인을 범하였고,만일 성인이 그와 같이 하였다면 중죄가 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법원의 절차에 언론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In re three unnamed Juveniles, 14 Med.L. Rptr. 2312(Ohio ct. common pleas 1988)

접근이 허용된 사례: 소년이 성인으로서 심리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공개함으로써 소년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추가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은 미디어와 일반대중의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권리를 능가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In re Roberts, 13 Med. L. Rptr.1427(Ohio common Pleas 1986)

비공개요청이 거부된 사례 : 오하이오주 항소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비공개로 하여 달라는 소년의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명령을 발하기를 거부하였다. Ohio ex ret. Roberts v. Pierce, 13 Med. L. Rptr. 1142(Ohio Ct. of App. Pleas 1986)

오클라호마

법 10 장 1111 조(1987): 심리는 판사가 공개로 할 것을 명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로 한다. 그러나 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받아들여진다

법 10 장 1125 조(1987): 법원기록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서만, 그 사건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공개 되어진다

보도금지: 신문이 구금된 소년의 이름과 신원을 보도하는 것을 금하고, 소년인 피의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성문법 미국법 18 장 5038(D)조의 헌법성을 공격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그 법은 법원직원에게만 적용되고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Oklahoma Publishing v. U.S., 7 Med. L.Rptr. 1423 (W. D. Okla. 1981)

보도금지: 최고재판소는 이미 그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미디어로 하여금 소년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출간하는 것을 금한 오클라호마 사실심 법관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Oklahoma Publishing Y. District Court, 430 U.S. 308 (1977)

오리건

개정법 419. 498(1)조(1989): 판사는 그것이 어린이를 위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법 419. 567 조(1989) : 일반대중은 사건기록을 조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소년의 이름, 심리의 일자, 시간, 장소는 비밀이 아니다.

접근이 허용된 사례 : 소년절차에의 접근을 통제할 판사의 권한에 기초하여 소년절차에서 언론을 배제하기로 한 오리건 소년법원의 명령은 「법정 은 비밀로 하지 아니한다. 사법은 공개적으로, 돈으로 사지 않고, 완전히, 지체됨이 없이 행하여진다」 라고 하는 오리건주 헌법 제 1 장 제 10 조를 침해한다. Oregonian Publishing v. Deiz, 289 Or.277, 613 P2d 23(1980)

소년의 이름의 보도 : 원고가 소년법원에 관한 정보가 법원의 동의없이 누설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보도가 불법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이외에 신문의 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상, 사실심법원이 소년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한 데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 Mikan v. Valley Publishing, 38 Or. App. 287 (1979)

펜실베이니아

42 펜실베이니아 Cons. 법 6336(d)조(Purdon 1991): 법원이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된다.

42 펜실베이니아 Cons. 법 6307(6)조(Purdon1982): 일반대중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그들이 사건이나 법원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기록을 조사할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접근이 부인된 사례: 소년절차를 규율하는 성문법이 「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절차를 비공개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심법원이 주 헌법에 기초하여 언론과 일반대중에게 소년절차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 In re Aikens, 8 Med. L. Rptr. 1222(Pa. Sup. Ct. 1982)

푸에르토리코

법 34 장 2208 조(1988): 소년의 부모나 변호사가 공개심리를 받을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대중은 소년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판사는 소년의 변호사가 동의하는 한, 그 사건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사람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 34 장 2237(d)-(e)조(1988): 서면 요청에 의하여 판사가 그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나 일을 하고 있다 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대중은 소년법원기록을 조사할 수 없다. 소년의 이름과 사진은 보도될 수 없다. 보도는 법정모독으로 간주된다

사례없음

로드 아일랜드

일반법 14-1-30 조(1981): 일반대중은 절차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진다.

일반법 14-1-66 조(1990):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 피 고인의 이름과 주소는 일반대중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성문법의 합헌성: 일반대중을 소년절차에서 배제시키는 성문법은 합헌이다. 그러나 신문이 소년의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접근을 불허하는 명령은 무효이다. 만약 판사가 미디어측이 소년의 이름을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게 되었다고 결정하면, 신문이 소년의 이름을 보도하고 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미디어측이 소년의 이름을 법원으로부터 혹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서 알게 되었다고 결정하면, 판사는 미디어에게 소년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미디어가 그 소년에 관계된 절차 혹은 빠른 소년에 관계된 장래의 절차에 참석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dward A. Sherman Publishing Co. v. Goldberg*, 443 A. 241252(R. I. 1982)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 20-7-755 조(1990):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판사는 그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참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 20-7-755 조(1990): 법원 기록은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원의 동의를 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신문과 방송사는 그들이 법원기록이나 사회기록(social records)으로부터 소년의 신원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의 명령을 얻지 아니하는 한 소년의 이름, 신원, 사진을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절차의 비공개: 만약 일반대중이나 언론이 공격한다면, 판사가 절차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익 교량과 절차가 비공개로 되어야만 할까를 설명하여 주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공개절차가 소년의 재활 기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한 사실인정이다. *EX Parte Columbia Newspapers Inc.*, 286 S.C. 116, 333 S.E. 2d337 (1985)

사우스 다코타

법 26-7A-38 조(1991) : 모든 소년사건 심리는 법원이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로 한다.

법 26-7A-38 조(1991): 뉴스미디어는 법원의 명령을 얻지 아니하는 한 소년, 부모 또는 절차에서의 증인의 이름, 사진, 신원 또는 주소를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사는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때에만 법원의 명령을 허여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소인이 되고, 법정모독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

법 26-7A-37 조(1991): 절차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은 법원의 동의를 얻어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주 : 다음의 케이스들은 구법하에서 결정된 것 들로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효한 명령:** 사우스 다코타 대법원은 판사자신의 동의로 고지 없이 뉴스 미디어의 소년절차에의 접근을 금지하고, 어떠한 소년, 부모 또는 증인의 이름, 사진, 신원 또는 주소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관에게 그 명령을 위반하는 모든 자를 구금하라는 사실심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였다 주대법원은 사실심법원의 명령은 고지 없이 발하여졌고, 그 법원은 명령의 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은 무효이고, 그 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어떠한 고지나 심리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기 위한

성문법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실시하였다. *Sioux Falls Argus Leader v. Young*, 455 N.W.2d 864(S. D. 1990)

접근이 부인된 사례: 뉴스미디어를 소년절차 중재판에 관한 부분에서 배제시키는 법원의 명령은 그것이 그 사건이 이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미디어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다른 대안이 없었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 역시 소년으로서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효하다. *In re Hughes County*, 452N.W.2d 129(S.D. 1990)

비공개전의 절차: 소년절차를 비공개로 하기 전에 법원은 언론이(그 사건을 다룬) 방법과 정도, 심리전에 언론이 다룬 정도가 집중적이었는가, 소년의 이름이 공표되었는가, 비공개로 하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임시적인가 하는것을 고려하여 야 한다. 법원은 비밀로 하는 데에 대한 소년과 법원의 이해를 미디어의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권리와 형량하여야 한다. 비공개 명령이 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그 명령이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범위를 잡은 것 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표시하여야 한다. *Associated Press v. Bradshaw*, 410N. W. 2d 577(S.D. 1987)

테네시

법 37-1-124(d)조(1991): 심리가 법정 모독죄를 선고하기 위한 것이거나, 소년이 교통범칙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 한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법 37-1-153 조(1991): 법원의 기록은 그 절차나 법원의 일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개될 수 있는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텍사스

(가족) 법 54.08 조(Vemon 1991) : 일반대중은 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은 일반대중 중에서 일부를 받아들일 재량권을 가진다.

(가족) 법 51.14(e)조(Vemon 1991): 절차나 법원의 일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절차의 비공개: 사건에서 일반대중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이다. 소년이 당혹해하는 것을 막고, 공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비공개는 유효하다. 소년절차는 대체로 민사절차에 적응되는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심리법원이 일반대중을 배제한 것이 그르지 않다. *Dendy v. Wilson*, 142 Tex. 460, 179 5.W. 2d 269(1944)

유타

법 78-3a-33 조(1987):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은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배제된다. 그러나 범죄가 성인에 의하여 범해졌더라면 중죄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에 의하여 미디어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 78-3a-55(1)(c)조(1991): 사건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접근이 부인된 사례: 만약 성인에 의하여 범해졌다면 중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로 소년이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신청에 기하여 한 신문이 유타 소년법정에서 배제되었다. 유타 항소법원은 성인들에 대한 법체계에서 중죄가 되는 범죄에 대한 심리에 미디어가 참석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재량권이 판사에게 있다고 하면서 비공개를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범죄사건의 심리에 적용되는 공개의 원칙은 주당국이 미디어의 접근권을 능가하는 소년절차의 비밀성을 유지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소년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In re N.H.B., 769 p. 2d 844(Utah Ct. App. 1989)

버몬트

법 33 장 651(c 조(1981):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된다. 단, 법원은 사건이나 법원 업무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사람에 대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법 33 장 663 조(1981): 기록은 일반대중이 조사할 수 없고, 누구에 의하여도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접근이 허용된 사례: 살인죄로 기소된 소년의 경우, 그 심리가 소년법원에 의하여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인부절차(arraignement)나 관계 기록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버몬트 대법원은 심리전 절차나 기록은 원칙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고, 소년절차는 소년법원에 이송된 후에만 비밀이 된다고 하였다. 버몬트 대법원은 그것이 (아래에 나오는)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버몬트 대법원은 소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만이 비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In re K.F., 559 A. 2d 663 (Vt. 1989)

접근이 부인된 사례: 대법원은 사실심법원의 접근허용을 파기하면서 소년절차에서 일반대중을 배제하는 성문법이 합헌이고, 하급법원은 미디어를 받아들일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버몬트 대법원은 소년절차의 경우 일반대중과 미디어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참석할 권리를 가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하였다. In re J.S., 140 Vt. 458, 438 A2 d 1125(1981)

버진 아일랜드

법 5 장 2517(f)조(1991): 일반대중은 법원이 그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관련된 어린이나 가족의 신원을 밝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 성문법은 미디어가 법원에 법원기록 이외의 취재원으로부터 그 신원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다.

법 5 장 2529(b)조 내지 (d)조(1991): 법원기록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으로 받은 법원기록을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한 자는 500 불 이하의 벌금이나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버지니아

법 16.1-302 조(1988): 기소된 소년이 공개심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대중은 절차에서 배제된다.

법 16.1-305 내지 16.1-309 조(1991):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법원의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기록은 일반대중이 조사할 수 없다. 소년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원기록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3 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법 16.1-309. 1 조(1988): 사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만약 성인에 의하여 범하여졌다면 1, 2, 3 급 중죄(4, 5, 6 급 중죄는 해당되지 아니함)가 되는 비행을 범하였다고 재판한 경우나, 소년이 성인으로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년의 이름, 주소 및 범행의 성질을 공개할 수 있다.

기록에의 접근권: 소년기록의 비밀성에 관한 버지니아 법 16.1-305 조(1991)는 기록의 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된 요소들의 형량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법원이 사망한 소년에 관한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옳지 않다. 그 소년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소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비밀정보를 얻을 능력을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필요는 소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대신에 비밀준수의 약정하에 얻은 정보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회법원은 소년법원이 일반대중의 접근권과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형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n re Richmond Newspapers Inc., 16 Med. L. Rptr.1049 (Va. Cir. Ct. 1988)

워싱턴

개정법 13.34. 110 조(1991): 일반대중은 법원이 그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에서 배제된다.

워싱턴 개정법 13.50. 010 조(1991): 일반인은 그 기록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연구 목적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 목적으로 기록을 보는 일반인은 소년과부모의 이름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인증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에의 접근: 신문의 연구는 성문법하에서 「교육, 과학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적법한 연구」 이기 때문에 신문에 대하여 기록에 접근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신문은 보도에 있어 기록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유지함과 같이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구」로 인정될 수 있다. 연구가 적법한 연구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법원은 다른 지방신문이 전에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썼고, 소년들중의 한명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되어 있고, 그 소년에 관계된 형사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기자의 접근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Seattle Times Co. v. Benton County, 99 Wash. 2d 251, 661 P 2d964 (1983)

웨스트 버지니아

법 49-5-1(d)조(1986): 소년이 출석을 요청한 사람이나 병원이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대중은 절차에서 배제된다.

법 49-5-17(d)조(1986): 문서로 된 법원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연구자는 절차에 관계된 소년이나 가족의 신원을 나타내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도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문이 적법하게 취득한 소년 범행용의자의 이름을 사실에 부합하게 보도하였다고 하여 주당국이 이를 처벌하려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년의 재화를 돕기 위하여 범행을 한 소년의 익명성을 보호할 주의 이익은 보도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Smith v. Daily Mail*, 443 U.S. 97 (1979)

위스콘신

법 48.299 조(West 1990): 소년이 공개 사실인정 심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대중은 심리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의 희생자나 부모, 후견인이 반대하는 한 심리공개요청을 허락할 수 없다. 어린이의 신원을 알려주는 정보를 공개한 자는 법정모독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그 사건이나 법원의 일에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법 48.396(2)조(West 1990):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접근이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기록은 비밀이다.

접근이 허용된 사례: 뉴스미디어는 법원의 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심판사는 신문기자에게 소년절차에 참석하고 그에 관하여 보도할 것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 이 사건은 구법원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구법은 소년법원에의 접근을 규율하는 현재의 성문법으로 재정비되었다. *State ex rel. E. a. v Flynn*, 88Wis. 2d 37, N.W. 2d 313 (1979)

와이오밍

법 14-6-224(b)조(1991): 일반대중은 법원이 그 절차나 법원의 일에 관하여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에서 배제된다.

법 14-6-239 조(1991): 기록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사례없음